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편집위원의 선정은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1)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 (2) 논문심사 경험이 있는 자
 -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 (4) 지역별 안배

제 3 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편집이사가 맡게 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4 조 위원회는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및 관련 학술자료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2. 기타 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심의 및 결정
3.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투고된 모든 원고(원저, 중설, 그리고 사례보고)에 대하여 그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상호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심사위원의 선정) 투고된 원고의 주요 내용을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에게 알리고, 편집위원들이 적절하다고 추천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선정된 원고별 심사위원의 명단은 편집위원회 외부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3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 5 조 (1차 심사) 1차 심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한다.

- ① 현 상태로 수정 없이 게재 가능
- ② 일부 수정 후 게재 가능
- ③ 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편집위원회 실무진에서 확인 후 게재 가능
- ④ 지적 사항에 따른 내용 수정 후 재심사
- ⑤ 게재불가
- ⑥ 기타

제 6 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결과가 취합되면 투고자에게 이를 알려 주고, 투고자로 하여금 논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심사내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들의 심사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부담이 더 되는 의견을 우선한다.

제 7 조 (2차 심사) 1차 심사결과 제5조 ④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사소견에 대한 투고자의 의견서를 붙여 2차 심사를 의뢰한다. 단 제5조 ③항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2차 심사 결과도 1차 심사 결과와 같이 6가지로 구분한다.

제 8 조 (게재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공히 게재불가로 심사의견이 모아진 경우
- ② 최종 1차 심사결과가 3인 중 1인에서 게재불가일 때는 다른 2인의 심사위원에게 게재불가 이유를 알려주어 다른 2인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에 동의하는 경우
- ③ 심사결과에서 투고자가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으나,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까지 수정 보완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④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제 9 조 (제3 심사위원의 선정) 제5조와 제8조의 절차에서 심사위원 3인 중 1인만이 게재불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에게 독립적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서식) 심사과정에 필요한 서식은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사용한다.

제11조(심사료) 논문투고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징수하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연구윤리 규정

이 연구윤리규정은 이 학회 회원이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 논문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게재되어야 한다.

“윤리규정”은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 2 조 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 4 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고문헌 또는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 5 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

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이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투 고 규 정

1. 일반사항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는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의 공식 학술지로서,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1. 원고의 종류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에는 농촌의학과 지역보건 및 이와 관련된 원저, 종설, 사례보고 등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1.2. 원고 투고 자격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이 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 후(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3. 원고 게재여부 및 게재 순서

모든 원고는 농촌의학·지역보건 학회지의 심사규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채택된 원고의 게재순서는 최종 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중복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중복 출간은 다른 언어로 독자층이 상이하며,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오만 원(W50,000) 및 게재료 1쪽당 일만 오천 원(W15,000)을 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6. 환자의 인권보호

사례보고의 경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정확한 날짜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7. IRB 승인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IRB로부터 승인받고 피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 및 일자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 연구에 대한 IRB 승인여부도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

1.8.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제출 후에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교신저자에게 회송한다.

1.9. 저작권

이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가 소유한다.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서식(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제출

본지는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원칙적으로 투고는 원본 원고 파일, 심사용 원고(저자의 인적 사항 삭제) 파일, 그리고 저자가 표기한 자가 점검 사항 파일(자가 점검 사항은 팩스로 보낼 수 있다)을 편집위원회에 전자우편(jrkim@gnu.ac.kr)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 파일이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3. 원고 투고 요령

원고는 심사용 원고와 최종 게재용 원고로 나눈다. 게재 원고의 종류가 학회지에서 규정한 종류에 해당하지 않거나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3.1. 심사용 원고

심사용 원고는 A4 용지에 상하좌우 모두 30 mm 여분을 두고, 글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여 용지 한쪽 면에만 인쇄하여야 한다. 전체 원고를 가로쓰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와 속표지를 제외한 초록부터 연속하여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심사결과로서 수정, 보완을 요구받았을 경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원고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 원고 제출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수정원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로 처리된다.

3.2. 최종 게재용 원고

심사 완료 후 게재하기로 채택된 논문의 최종 수정원고는 원본 파일을 심사용 원고 제출 시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서식)와 함께 제출한다.

3.3.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인쇄면수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 양식

원고의 순서는 원저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 참고문헌(references), 표와 그림(table & figure), 그림 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 본문은 제목, 서론, 대상(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요약으로 나눈다.

종설은 영문초록,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독립하여 구성한다.

4.1. 표제지

표제지에는 1) 국문 및 영문제목, 2) 국문과 영문의 저자 이름, 소속 3)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성명(국문 및 영문), 주소(국문 및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그리고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속표지는 논문의 국문 및 영문 제목을 기록하고 20자 이내의 간추린 제목(running title)을 첨부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천과 관련 정보를 밝힌다.

4.2.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3)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저자들의 소속이 다른 경우 1), 2) 등을 위첨자로 저자명과 소속기관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표시한다.

4.3. 논문 제목 및 초록

논문 제목, 저자, 소속은 가운데 배열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이 요약 정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로 표기하며 약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작성하며 영문초록의 경우 250 단어 이내, 영문원고는 국문초록을 작성하며 분량은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한다. 소항목 내에서는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Key words)를 5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 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쿠스(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주제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쓴다.

4.4. 본문

본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서론은 연구의 목적과 배경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며, 대상 및 방법에서는 타인이 재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결과는 객관적 자료만을 제시하고 저자의 주관이나 질문, 부연 설명 등은 기술하지 않도록 하며 고찰에서는 연구 목적이나 결과와 관련된 내용, 저자의 견해, 결론 유도에 필요한 내용만을 간결하게 쓰도록 한다.

① 용어 : 학술용어는 가장 최근에 대한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에 준하여 국문으로 사용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② 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

후에는 약어만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 ③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 ④ 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에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 연구에 중요한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 ⑤ 항목구분
 - 1) 국문의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 2)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장을 구분
예 : I, II, III, A, B, C, a, b, c
- ⑥ 참고문헌의 인용 :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저자를 기술하고자 할 때에는 저자의 성(姓)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대괄호 [] 내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번호를 기재한다(단, 국문 단행본인 경우에는 국문으로 기재한다). 저자가 2인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와/과”로 표기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첫 저자를 쓰고 “등”으로 표기한다(예; Kang과 Park[1], Choi 등[2]).

4.5. 그림, 표

그림(Figure), 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단, 영문으로 표기하기 곤란할 경우는 국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표는 수평선이나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단, 선을 넣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경우에는 삽입할 수 있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에는 위첨자로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컴퓨터 저장매체의 경우 한 개의 파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2개의 파일로 작성한다.

표의 모양과 결과 값 제시

표 내에서 선 긋기는 대개 수평선 3개를 사용하고, 수직선은 긋지 않는다. 필드 공간을 빈 채로 두어서는 안 되고, 자료가 없다면 'ND'*(Not done or Not detectable), 'NA'*(Not available or Not applicable), 또는 '-' 등으로 표기한 후 주석에 해석을 붙인다. 표준이 아닌 상징과 약어는 주석에 설명해야 한다. 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P값은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P값의 소수 둘째자리까지가 0인 경우는 값을 그대로 명시해줄 필요가 있는데, 0.001미만인 경우에는 $P < 0.001$ 의 형태로 표시한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Young-old group (n=359)	Old-old group (n=197)	P [†]
Age, mean (SD), years	69.4 (2.7)	79.1 (3.1)	<0.001
Sex			
Men	162 (45.1)	72 (36.5)	0.06
Women	197 (54.9)	125 (63.5)	
BMI			
Normal (18.5-22.9)	32 (8.9)	28 (14.2)	0.08
Overweight (23-24.9)	144 (40.1)	84 (42.6)	
Obese (≥25)	183 (51.0)	85 (43.1)	
BP, mean (SD), mm Hg			
Systolic	151.3 (10.6)	152.2 (10.0)	0.55
Diastolic	89.4 (8.0)	89.0 (7.9)	0.74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calculated as weight in kilograms divided by height in meters squared; BP, blood pressure.

*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unless otherwise indicated.

† P value from t test for continuous outcomes and χ^2 test for binary outcomes

4.6. 참고문헌

참고문헌의 기재순서는 본문에 인용한 번호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나열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 Index Medicus에서 사용하는 체제에 따라 다음의 예를 따르며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의 표기 방식에 따른다.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1편 이상 인용하여야 하며 한글로 작성된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고 말미에는 (Korean)라 부기한다. 단,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참고문헌은 30개 내외로 할 것을 권고한다(단, 종설의 경우 예외로 한다).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의 경우 해당 약자를 쓰고 비등재학술지의 경우 그 학술지에서 정한 고유 약자 혹은 학술지명 전체를 기재한다. 참고문헌은 다음 예시들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학술지 논문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발행년;권(호) 수:쪽수 공저문헌의 저자는 모두 표기한다.

(국내학술지)

Lee YH, Kim JH, Han GS. Association of dietary factors with cognitive impairment in older women. *J Prev Med Public Health* 2004;37(2):174-181 (Korean)

(국외학술지)

Robinson J, Karon SL. Modeling medicare costs of PACE (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populations. *Health Care Financ Rev* 2000;21(3):149-170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장소, 발행사, 발행년, 쪽수

Kelsey JL, Thompson W, Evans AS. Methods in observational epidem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267-271

3) 단행본의 장(chapter)

Montano ED. The scope of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In: Glanz K, Rimer BK, Viswanath K, editor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San Francisco, John Willey & Sons, Inc., 2008, p.10

4) 전자매체 자료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 Emerg Infect Dis[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 screens]. Available from : URL:<http://www.cdc.gov/ncidod/Eid/did.htm>.

- Internet-based Journal Article (e-Journal)

Kaul S, Diamond GA. Good enough: a primer on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noninferiority trials. Ann Intern Med [Internet]. 2006; 145: 62-9 [cited 2008 Jan 4]. Available from: <http://www.annals.org/cgi/reprint/145/1/62.pdf>.

- Internet-based Book (e-Book)

Higgins JP, Green S, editor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Internet]. Version 4.2.6.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Ltd.; 2006 [updated 2006 Sep]. Chapter 3, Guide to the contents of a protocol and review; [cited 2006 Nov 17]; p. 37-57. Available from: <http://www.cochrane.org/resources/handbook/handbook.pdf>.

- 웹페이지/홈페이지를 참조했을 경우

AMA: helping doctors help patients [Internet].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c1995-2007. [cited 2008 Feb 22]. Available from: <http://www.ama-assn.org>.

5) 학위 논문

Kim MW. A study on agreements among screening tests and related factors with postpartum depression [dissertation].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9 (Korean)

5. 종설 투고 유의사항

◦ 논문의 제목, 저자, 소속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 원고의 분량은 A4 10쪽 이내(글자 크기 10.0 포인트, 줄 간격 200% 글자 수 15,000자 이내)로 한다.

- 영문초록 2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의 수는 제한 없다.

6. 사례 보고 투고 유의사항

- 사례 보고는 농촌의학 및 지역보건 분야의 주제에 대한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다룬다.
 - 원고 양식 및 분량은 원칙적으로 원저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영문 초록: 원저와 동일하다.
 - 2) 서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배경 또는 국내외의 사업에 대한 쟁점과 동향이 정리되어야 한다.
 - 사업이 보고되어야 하는 인정될만한 이유(예: 사업의 혁신성, 사업의 효과, 또는 비용-효과적인 측면 등)가 있어야 한다.
 - 3) 방법: 저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소제목을 붙일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의 방법 및 내용은 재현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서술하여야 한다. 단, 다른 문헌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보조적인 내용을 장황히 늘어놓지 않아야 한다. 사업에서 사용한 도구 및 교재의 원본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참고문헌에 표기하여야 한다.
 -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하는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면 기술하여야 한다.
 - 4) 결과: 사업의 주요 성과를 표 또는 그림으로 제시한다.
 - 5) 고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의 평가 방법 및 결과(강점 및 약점)를 기술한다.
 - 추후 사업 시 보완 및 발전방향을 기술한다
 - 6) 요약: 원저와 같다.

7. 위임사항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8. 규정의 발효

-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가 점검 사항

논문을 투고하실 때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 에 ☒ 로 표기하십시오.
투고 시 논문과 자가 점검 사항을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원본 원고 파일 및 심사용 원고 파일 ☐ 자가 점검 사항

☐ A4, 10 포인트 ☐ 줄 간격 200% ☐ 페이지 번호
(세 번째 장의 영문초록부터 페이지 번호가 1이 된다)

☐ 원저, ☐ 종설, ☐ 사례보고, ☐ 기타_____

☐ 원고의 구성

- | | |
|--------|--|
| 전체 페이지 | ☐ 15 페이지 |
| 표지 | ☐ 겉표지(국문 및 영문 제목, 국문과 영문의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교신저자의 성명,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 |
| | ☐ 속표지(제목 및 간추린 제목 기재) |
| 영문초록 | ☐ 250 단어 이하 |
| | ☐ 영문제목 |
| | ☐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의 소제목 하에 구성 |
| | ☐ 영문 주제어: 주제어는 MeSH에 등재된 단어로 5개 이내 |
| 고찰 | ☐ 서론이나 결과에 기술된 것을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음 |
| 참고문헌 | ☐ 30개 이내 |
| | ☐ 투고규정 준수 |
| | ☐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편 이상 인용 |
| 표와 그림 | ☐ 투고규정 준수 |
| | ☐ 수치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오차가 없음 |

이상과 같은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투고한 논문의 반송을 허락합니다.

제1 저자

(서명)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

논문 제목 :

위 제목의 논문이 “농촌의학·지역보건”지에 출간될 경우 그 저작권을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에 위임한다.

저자는 저작권 이외의 모든 권한 즉, 특허 신청이나 향후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 논문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는 등의 권한을 소유한다. 저자는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으면 타 논문에 이 논문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가 발표된 원 논문을 밝힌다. 논문의 모든 저자는 이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책임을 공유한다.

이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타 학술지에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보장하고 아래에 서명하는 바이다.

제1 저자 / 년 월 일

제2 저자 / 년 월 일

제3 저자 / 년 월 일

제4 저자 / 년 월 일

제5 저자 / 년 월 일

(6명 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면에 서명해도 가함)